

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

- 지난해 국회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

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.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('25.1.17~2.5), 차관회의·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·시행 될 예정입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【첨부】 1.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
- 2.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

- 소득세(4211~3, 4215~4217), 법인세(4221~4, 4226), 상속증여세·종합부동산세·양도소득세(4311~3, 4316~8), 금융세제·증권거래세·교육세(4231~3, 4236), 부가가치세·영농기자재특례규정(4321~3, 4326), 개별소비세·교통에너지환경세·주세·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(4331, 4333, 4336), 국제조세(4651~6, 4661~6, 4671~2, 4675), 조세특례·농어촌특별세법(4131~3, 4136, 4142), 관세(4411~3, 4416, 4431~3, 4461~4462, 4471~3),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(4151, 4152, 4154)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 양순필 (044-215-4110)
		담당자	서기관 배현중 (hyunjoongbae@korea.kr)